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6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5. 23. 이한동 의원 외 6명

나. 회부일자: 2025. 5. 23.

다. 상정일자: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6. 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한동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- 시보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일부 신분상의 제한이 있을뿐, 엄연히 공무원임에도 동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별의 소지가 존재함.
- 이에 조례 적용 범위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 조문을 삭제하고, 실제 직무수행 상태라 볼 수 없는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적용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 기간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정직·직

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으로 변경(안 제3조 제2호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8조 및 제77조
- 입법예고: 2025. 5. 19. ~ 5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적용 대상에서 시보임용 기간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시보 공무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- (안 제3조 제2호)에 조례 적용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 기간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
③ 개정내용 검토

○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대상자의 자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구체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함.

○ 기대효과

장애인 공무원 중 징계 등의 사유로 정직 또는 직위 해제된 자도 여전히 장애로 인한 업무 및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, 편의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또한 편의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음.

4] 타 자치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적용 범위 현황

○ 시보 임용 기간 미제한 자치구 현황(13개)

연번	자치구	제한대상
1	강동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2	금천구	1. 휴직 2. 파견
3	동작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4	서대문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5	성동구	1. 휴직 2. 정직·직위해제
6	성북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7	영등포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8	용산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9	종로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10	중랑구	1. 휴직 2. 국내외 파견
11	광진구	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서 규정해 적용범위 관련 별도 규정 부존재 광진구의회조례: 1. 휴직 2. 정직, 직위해제 3. 국내외 파견
12	양천구	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서 규정해 적용범위 관련 별도 규정 부존재
13	중구	적용범위 관련 별도 규정 부존재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 지원 제 공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강화하며, 장애인 시보공무원도 동등한 대 우를 받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24. 12. 31.] [법률 제20621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제28조(시보임용) ① 5급 공무원(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, 6급 이하 공무원(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, 그 기간의 근무성적·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휴직 기간,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
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·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

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